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청구개선안(면허종류 및 번호 기재, 7.1.시행) Q&A 관련 안내·추가 사항 송부**

○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시는 귀 기관 및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13.7.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세부 실무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면허정보기재 관련 주요개정사항 안내 책자’ 을 전국 요양기관 및 각 협회에 송부드린 바 있습니다.(2013.6월초)

○ 질의응답집 관련하여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안내(1건)하고, 주요 의문사항을 추가(8건)하여 질의응답 II(Q&A)를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담당기관에서는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협회에서도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 청구 시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수정 추가 안내. 끝.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 청구방법 관련 Q&A 안내사항

Q1-6 . 외래환자 진찰료 중 AA222 (재진-물리치료, 주사등을 시술받은 경우) 산정 시 물리치료 등을 지시한 의사가 퇴사 한 경우

○ 원안대로 명세서 상병내역과 진료내역에 인계받은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일부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 처방 후 의사가 퇴사한 경우 새로운 의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어 퇴사한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해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 처방 후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물리치료, 주사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이는 처방에 따른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인계받은 의사를 지정하고 그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합당함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 청구방법 관련 Q&A 추가 사항

Q14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의사의 기준

■ (명세서 상병내역)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주상병을 진단하고 처방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 인력신고 관련 Q&A 추가 사항**

Q10 수련병원의 모병원 소속 전문의가 자병원에 주 1~2회 내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 (전문의 신고) : 모·자기관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 모기관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자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11 A기관 소속 전문의가 B기관에 주 1~2회 내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 (전문의 신고) : A기관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 A기관은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B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12 전문의가 A기관에 주3일(월·수·금) 20시간 이상, B기관에 주3일(화·목·토) 20시간 이상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 (전문의 신고) : A기관(선입사기관)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B기관(후입사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13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자병원에 파견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 (전공의 신고) : 수련병원의 모병원에서 퇴사신고를 하고, 자병원에서 입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턴의 모병원과 자병원의 파견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 약국의 A약사가 1~2시간 부재 시 B약사(개설자 제외)가 잠시 조제한 경우 인력신고 방법은?

- (약사 신고) : B약사가 조제한 내역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타 인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15 약사가 A기관에 주3일(월·수·금) 20시간 이상, B기관에 주3일(화·목·토) 20시간 이상 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은?

- (약사 신고) : A기관(선입사기관)은 비상근으로 신고하고, B기관(후입사기관)은 기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16 설립구분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타 요양기관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법인대표자의 인력신고) : 법인대표자(의사)는 여러 기관의 대표자로 등록가능하며, 해당 법인의 봉직의사 및 타 요양기관의 봉직의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개설도 가능하지만 인력신고는 개인이 개설한 요양기관 소속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법인의 봉직의사와 이중등록 안됨)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서울특별시(건강증진과장), 부산광역시(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최은영 행정사무관 협운태 보험급여과장 배경택 전결 2013. 6. 28.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1264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가회동)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8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2-2023-7415 팩스번호 02-2023-7415 / cey1010@korea.kr / 대국민 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